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49회 제1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1. 6. 10.(목)

검 토 안 건	발 의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조광현)

검 토 보 고 서

(보고자 : 전문위원 조광현)

1. 검토안건

- 안건명 :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2. 제출경위

- 제출자 : 마포구청장
- 제출일 : 2021. 5. 21.
- 회부일 : 2021. 5. 24. (의안번호 : 21-62)

3. 제출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마포복지재단의 행정재산 무상사용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무상사용 필요성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마포복지재단 설립에 따라 공유재산을 재단 사무실로 무상사용 하고자 함.

나. 무상사용 시설현황

무상사용 시설

시 설 명	소 재 지	무상사용 면적
염리종합사회 복지관	서울시 마포구 대흥로24길50(염리동)1층	159.60 m^2 (1층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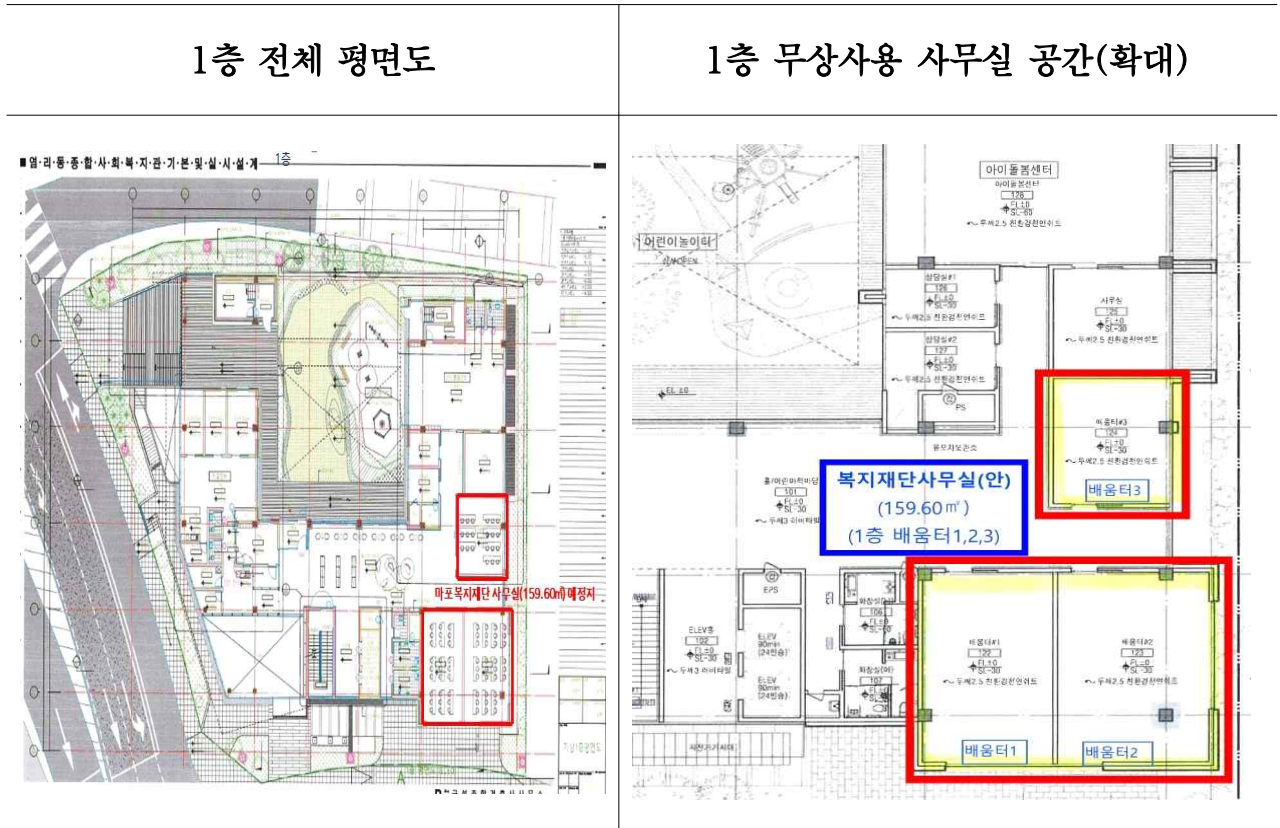
※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1. 8. 20. 준공예정

[표 1] 염리사회복지관 시설개요

- 시설명: 염리종합사회복지관
- 위 치: 마포구 대흥로24길50(염리동)
- 규 모: 연면적 8,047.01 m^2 , 대지면적 2,325.20 m^2
- 준공예정일: 2021. 8. 20.
- 층별 주소시설 현황(지하2층/지상4층)

구 분	면 적(m^2)	주요 배치 시설	비고
지상4층	1,166.62	식당, 통합사무실, 세미나실, 요리교실	복지관
지상3층	1,236.04	사무,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실, 소강당	
지상2층	1,186.82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체력단련실, 데이케어센터	장애인 노인시설
지상1층	1,056.97	아이돌봄센터, 상담실, 우리동네키움센터, 배움터	
지하1층	1,537.53	북카페, 강당, 세미나실, 북카페, 다목적실, 방재실	
지하2층	1,863.03	주차장, 전기실, 기계실, 정화조실	

[표 2] 염리사회복지관 평면도



다. 사용기관 : 마포복지재단

라. 사용용도 : 재단 사무공간(사무실, 임원실, 교육실, 기탁물품 보관실)

마. 사용기간 : 2021. 11. 1. ~ 2026. 10. 31.(5년)

바. 사 용 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면제'

사. 추진경과

- 공유재산 무상사용 구의회 동의안 안전 상정 : 2021. 6.
 - 제2차 추가경정시 복지재단 설립운영 예산편성에 따라 사전 동의안 제출
- 공유재산 심의회 안전 상정 및 심의 : 2021. 6.

- 마포복지재단 사무실 사용 허가: 2021. 10. 예정
 - 공유재산 심의 및 의회동의 후 행정재산 사용 허가 조건을 붙여 무상 사용 허가서 교부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2)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 3)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운영재원)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2의2호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 2021년 11월 출범예정인 마포복지재단의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 임원실, 교육실, 기타물품 보관실 등 재단 사무공간으로 우리 구 행정재산 염리종합사회복지관 1층 159.60 m^2 를 무상으로 사용하고자 구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 염리종합사회복지관은 대흥로 24길 5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2,325.20 m^2 연면적 8,047.01 m^2 지하2층/지상4층 규모로 건축 중에 있으며 2021.8.20. 준공예정입니다. [표1], [표2]

○ 검토의견

사회복지 정책 환경 변화와 지역문제에 선제적이고 다양한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증진으로 지역복지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마포복지재단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단 설립을 위하여 우리 구는 50억의 기본 재산과 보통재산 및 행정재산을 투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이 재원이 재단을 통해서 우리 구민의 사회복지 서비스 수준이 한 단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는 면밀한 계획수립과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참고자료 1. 마포복지재단 설립 개요

2. 관계법령

【별첨 1】

마 포 복 지 재 단 설 립 개 요

- 명 칭 : 마포복지재단
- 설립형태 : 자치구 출연기관, 비영리 재단법인, 공익법인
- 설립주체 : 마포구
- 설립예정일 : 2021년 11월
- 기본재산출연 : 50억원
 - '21년 20억 출연, 이후 매년 10억씩 3년간 출연 예정
 - ※ 시 설립허가 기본재산 최저기준 : 20억원
- 운영재원 : 구 출연금, 이자수입, 후원금, 기타
 -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구출연금)
- 조직 및 인력
 - 조 직 : 이사회, 감사, 사무국
 - 임 원 : 이사 15명 이내, 감사 2명
 - 직 원 : 2개팀 7명
- 주요사업 (우선순위)
 -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모금·배분)
 - 네트워크 구축 및 민관협력 사업
 - 지역복지 역량 강화 및 복지공동체 강화
 - 사회복지시설 운영 · 관리
 - 지역복지 조사·연구 정책개발

【별첨2】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24조제1항제4호에서“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8조(공유재산 무상 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